

# 임금피크제 운영규칙

제 정 2016. 12. 29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38조에 의해 위임받은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는 법령, 정관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.

## 제2장 임금피크제의 적용

**제3조(대상자)** 임금피크제 적용은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4조(적용시기)** 직원은 정년도래 2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, 정년퇴직일이 6월 30일인 직원은 7월 1일부터,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인 직원은 익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**제5조(임금조정)** ①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- 1. 임금피크제 전환 1차 년도 : 95%
- 2. 임금피크제 전환 2차 년도 : 75%

②임금피크제 연차구분 기준은 전환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하고, 연구원 직원의 매년 임금인상률 평균을 반영한 후 조정률을 재 적용한다.

- 제6조(수당)** ①업무의 내용이나 실적과 무관한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선택적 복지금 등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.
- ②연차수당, 실적평가금등 임금피크제 조정률과 연관이 있는 수당은 임금피크제 조정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.

### 제3장 인사관리

**제7조(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승진)** 1차년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승진함이 없이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, 2차년도 직원은 직급 정원에서 제외한다.

**제8조(별도직군)** ①2차년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종전 직급 정원에서 제외하고, 별도직군 현원으로 관리한다. 이 경우 신규발생 정원만큼 신규채용을 실시한다.

②별도직군으로 운영되는 직원의 호칭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다.

**제9조(재취업 및 창업지원 대상자)** ①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취업 및 창업지원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재취업 및 창업지원 대상자는 인사담당 부서로 발령처리 하고, 재취업 및 창업, 노후설계, 귀농귀촌 등 교육연수 일정을 반영하고 해당 교육훈련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.(1년차 1개월 이내, 2년차 6개월 이내)

**제10조(직무부여 및 평가)** ①1차년도 임금피크제 직원은 직급 유지에 따라 현행 직무를 유지하되 직무량은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, 재취업 및 창업지원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은 2년차 직원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수행, 시설관리, 민원응대 및 기타 원장이 정하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.

②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평가는 해당 평가군에서 직원평가규칙대로 평가받고, 별도직군 평가군으로 분류하여 별도직군 전환전 직급의 평균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.

③실적평가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한다.

**제11조(준용)**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 및 보수 규정 등 현행 규정을 준용한다.

## 제4장 퇴직금

**제12조(퇴직연금)** 임금피크제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확정 확정기여(DC)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## 제5장 기 타

**제13조(기타)**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원장 방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